

제42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20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숙려기간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언론의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내용이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우리 법사위원들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여 복지위 강선우 간사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의원,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김선민 의원, 김예지 의원, 김윤 의원, 김태년 의원, 남인순 의원, 박수영 의원, 서영석 의원, 성일종 의원, 소병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은 보험료율이 9%입니다. 이를 2026년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33년부터는 13%가 되도록 하고, 2025년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며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크레디트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6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디트를 확대해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고,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디트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하면서 첫째아·둘째아는 각각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그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납부 중단 후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오던 것을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도록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의 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 서 계시고요.

제가 운영과 관련해 좀 알아보니까 제안설명한 의원에 대해서 개별 위원들이 질의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돋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요할 테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한다고 하는 게 골자 아닙니까?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 요율 13%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기준은 현재 소득입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 급여에서 4.5%가 나가고 회사에서 나머지 4.5%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들이 지금 현재 9%를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13%로 되니까 그 껑충 뛴 4%도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것 이지요. 반을 부담해 주는 회사가 없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50%를 12개월 동안, 지급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안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보험료율 13%라고 그러는데 어디의 어떤 금액이 13%인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제가 급여를 100만 원을 만약에 회사에서 받는다 그러면

저는 6만 5000원을 내겠지요. 그리고 회사가 6만 5000원을 내게 되겠고요.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보험료율 계산할 때 상단과 하단을 제외하고 평균을 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그것은 소득대체율 관련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소득대체율 관련해서 그렇고요.

소득대체율을 그러면 지금 43%로 합의를 본 건가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맞습니다. 지금 현행은 40 정도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43%로 인상을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소득대체율 43%라는 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A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소득,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평균소득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A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복잡한 산식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하기 빼기를 해 가지고 그 나머지 값을, 산출된 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건 이따가 질의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군복무·출산 크레디트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군복무크레디트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군 복무를 몇 개월을 했든지 상관없이 6개월만 그 기간으로 산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것을 12개월로 확대를 하되 12개월 내에서 복무한 기간만큼 최대한 산입을 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대체율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군복무크레디트를 그 정도 확대를 시켜 주면 소득대체율의 한 0.7% 가깝게 더 받게 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출산크레디트는요?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선우 출산크레디트는 지금 기준에는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산입이 안 됐었고요, 기준은 둘째아 12개월 그다음에 셋째아 18개월 그다음에 상한이 50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첫째아부터 산입이 됩니다. 첫째아 12개월, 둘째아 12개월 그다음에 셋째아 18개월 하고 그다음에 거의 무의미한 이 상한 50개월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 수를 계산을 해 보면 출산크레디트가 이 정도로 개정이 되면 소득대체율에서 한 플러스 1% 정도까지 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국민연금법이 계산법도 좀 복잡하고 용어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복지위 위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원들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알기가 좀 어려웠고, 특히 합의안에 대해서는, 그러니 다른 상임위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 됐나 보다, 이렇게 통과됐나 보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선우 위원님께 기초적인 기초교양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고요.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이따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제안설명하신 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추가산입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현재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위원장 정청래** 예.

대체토론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월급이 300만 원인 한 50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제도는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9만 원을 내고 40년 가입을 하게 되면 41만 5000원을 받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9만 원을 매달 내고 은퇴한 후에 매달 41.5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혁으로 돼 가지고 이제 13만 원을 내고 43만 원까지 받으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보험료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중간에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에는 보험 가입기간으로 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절의 대표적인 것이 출산과 군 복무입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소득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개념이 크레디트입니다. 그런데 그 크레디트 기간을 늘려 가지고, 우리가 소득대체율의 상승을 해 가지고도 노후 생활을 보장했지만 크레디트 확대를 통해 가지고 가입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입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보험료율을 27년 만에 올렸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진 연도가 15년 정도 뒤로 가서 2071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에는 이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연금특위를 통해 가지고 구조 개혁을 통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어떻든 스무 살짜리 청년이 있다…… 국민연금에는 모두 다 가입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모두 다 의무 가입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의무 가입인데 중간에 군대를 가시거나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단절되면 납부예외자라는 조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예전에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반을 내고 자신이 반을 내서 학교 교사나 교수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 연금생활자라 그래서 연금으로 살아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 어떻든 가입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은 매달 어렵지만 9만 원, 많이 내면 100만 원인 경우에 13만 원까지 내게 된다면 노후가 된 이후에, 65세 이후에 매달 43만 원씩은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저금을 조금 더 하시고 이 정도 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동안 왜, 뭐 때문에 여야는 합의가 안 되고 여지껏 왔던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암만해도 보험료율을 인상시킨다고 하는 게 국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1998년에 보험료율을 확정한 이후에는 그동안 개혁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으로만 계속해 왔습니다. 원래 70%였다가 60%였다가 이제 40%까지 낮추는 계획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소득 보장은 소득 보장대로 안 되고 또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대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혁을 하게 됐는데 노후소득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틀어서 봄야 된다는 게 구조 개혁의 개념인데 그것은 연금특위에서 보다 좀 더 상세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어떻든 조금 더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 더 내는 것도 맞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처럼 과거에 '70% 줍니다'라고 했던 게 계속 줄어들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금은 제대로 투자를 해서, 사실 국민이 세금을 냈으면 거기에는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은 우리가 맡긴 돈이니까 거기에 더 많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줄어들었고 지금도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어떻든 내는 것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으나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소득대체를 주기 위해서 나라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저희 기금에 쌓여 있는 돈이 세계 한 4위 규모, 1000조 원이 넘습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잘 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 기금본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까지 같이하고요.

또 이것은 매 5년마다 70년 식의 재정 재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인해 가지고 18년 만에 모두 개혁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사실 연금개혁은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야가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 그 기대수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고갈되는 시점이 한 17년 정도 연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고갈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207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고려가 되는지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는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과 관련해서 보험료 납부 중단 후에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해서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전의 소급효가 좀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급효는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소급효는 없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던 부분은 그냥 혜택을 못 받고 앞으로만 그러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기존에는 납부 재개자에 한해서 보험료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우신 분이라도 일단 가입을 해서 돈을 냈다가 중단을 했다가 다시 낼 경우에만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일정 소득 이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가입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해를 했고요.

17년 연장은 했는데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연금특위에서 구조 개혁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고 법상 5년마다 70년의 장기 재정 전망을 하고 그것에 따른 조치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세우고 그것을 국회에 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지속가능성과—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필요한 거니까요—그다음에 노후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계속 그것을 절충해 나가고 합의해 나가면서 제도를 운용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번에 여야가 모처럼 국가적 최대 현안 과제인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해서 오늘 본회의 처리가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연금 재정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합의안의 내용에 전체적으로는 공감이 있지만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구조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청년층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조 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청년들의 불만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구조 개혁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구조 개혁을 단기간에 해 가지고 사회 수용성까지 높이는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위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여야 위원님들 모두 청년층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크레디트 확대와 군크레디트 확대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소진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국민연금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게 될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노후소득 강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보장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는 연금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 그 세 목표가 균형 있게 달성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과제는 우리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부담은 좀 늘리고 또 받는 것도 늘리는 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지금 얘기한 노후소득 보장, 그러면서도 세대 간의 형평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그 부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런 개인연금 간의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서, 같이 융합적 개혁을 통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어차피 정책 당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물론 정치권에서는 특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성의 있는 정부 측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금의 중요한 것은 운용의 수익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결국은 어쩌면 이 큰 책임을 한꺼번에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데 연금 운용수익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연금 재정 수준에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연금 운용수익률 상황을 보면 우리의 안정적인 전문가들의 인력 확보라든가 그리고 보다 더 과학적인 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뭔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뭔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알기로는 연금 수익률 1%p를 높이면 보험료율 2%p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만족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사회보험이나 다른 연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수익률을 더욱더 향상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쨌든 이번 합의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덜어 드리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목표, 바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든가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그리고 연금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성, 목표 어느 것 하나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서로 여야 합의해서 관련 제도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조규홍 장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금개혁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다가 법사위로 옮겨 와서 그 내용은 잘 압니다만 어쨌든 연금은 재정 안정성이라든지 소득 보장 강화라는 두 가지 딜레마를 늘 함께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서 시간을 다소 벌었고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보입니다.

개혁이 정말 오랜만에 이루어진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2007년 이후의 개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이고 보험료율은 27년 만입니다.

○**박희승 위원** 너무 늦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했고 또 복지부도 국회도 좀 소극적이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깊고 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희승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금이 1000조가 넘는데 10년간 수익률을 보니까 평균 5%가 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넘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아까 강선우 복지위 간사한테 물으려고 했었는데 소득대체율 있잖아요, 그 개념과 계산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득대체.....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득대체율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평균소득을 가진 가입자분이 40년간 연금을 가입하셨을 때 은퇴한 후에 받는 돈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40년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어요. 40년 동안, 이게 개념이 생애평균소득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것이 300만 원이 됐어요. 40년 동안 생애평균소득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됐으면 50%면 150만 원 받는 거잖아요. 대체율이 50%라면, 그렇지요? 그런데 43%니까 300만 원의 43%를 매달 수령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런데 그 안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40년 가입기간이 있는데 또 안에 계산하는 거는 아까 강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값 플러스 B값이 있어 가지고 자기 소득에 바로 비례되는 건 아니고 좀 약간 복잡한 면이 있는데……

○위원장 정청래 아까 강선우 위원 설명은 최상단·최하단을 빼고 가입자의 평균을 또 계산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복잡한 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그거는 더 잘하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면 급여액이라고 하는 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인 소득의 평균액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입자 전체의 소득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자는 자기 소득은 낮지만 가입자 평균은 자기 것보다 높을 테니까 이익이 되는 거고……

○위원장 정청래 많이 받는 거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고소득자는 자기 소득보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낮으니까 좀 손해를 보겠지요. 이게 소득안정화장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자신이 40년 동안 납부한 평균소득이 있을 것이고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있는데 내가 평균치에 못 미치고 저소득이라면 좀 혜택을 받는 거고 평균보다 높게 연금을 냈던 사람들은 좀 손해를 보고, 그래서 가운데를 좀 두껍게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9%에서 13%, 보험료율 있잖아요. 이것도 단순하게 계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 비과세를 제외한 매달 받는 근로·사업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소득월액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곱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본회의도 열어야 돼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시고 홍보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를 들면 홍길동이 몇 세에 가입해서 몇 세까지 납부했는데 평균 얼마를 냈고 얼마를 지금 내게 되고 나중에는 얼마를 받게 된다 이렇게 좀 쉽게, 홍길동이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제도가 복잡하고 저도 이해하는 데 좀 오래 걸렸는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도 강선우 간사한테 설명을 쭉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명징

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계산법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장관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월요일 날 한답니다. 왜 이걸 제가 먼저 말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셔서 들어 가지고요.

○박범계 위원 조규홍 장관님이 12월 3일 날 국무회의를 빙자한 거기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려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위원 오늘 이 국민연금 합의안이 사실상 지난번에 12·3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에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버티시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어요, 이 합의안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때도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거는……

○박범계 위원 43%, 아주 작은 수치, 그것이 합의가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숫자도 그렇지만 앞으로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제……

○박범계 위원 그거는 오늘 다룰 일이 아니지요. 앞으로의 논의사항이지요.

제 얘기의 핵심은 대통령이라는 빅브러더가 없으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규홍 장관께서 사실상 오케이를 한 거예요.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는……

○박범계 위원 오케이한 겁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수용했지요, 여야 합의안을.

○박범계 위원 조규홍 장관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수용 안 하면 이것 통과될 수 있어요? 합의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정부 내 의견을 모아서……

○박범계 위원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여야 합의……

○박범계 위원 그냥 긴장 푸시고 답을 해 보세요.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형태니까……

○박범계 위원 여야정이……

○곽규택 위원 너무 긴장되게 말씀하시네.

○조배숙 위원 아이참, 다 합의했는데.

○박범계 위원 가만히 좀 있어 봐요!

○박준태 위원 모양새 좋게 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빨리 통과시킵시다.

○박범계 위원 여야정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박준태 위원 저도 토론할게요, 그러면.

○박범계 위원 하세요.

박준태 위원!

○박준태 위원 예.

○박범계 위원 여야정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것 하나 여쭤봅시다.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 보세요. 소위 소진율, 우리가 오늘 이것 합의함으로써 소진이 몇 년 더 연장됐습니까?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 17년 연장된 걸로, 55년에서 71년.

○박범계 위원 55년에서 71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범계 위원 독일은 소진이 예상되는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지금 현재……

○박범계 위원 대략 알고 계시는…… 저 뒤에 몰라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박창규 독일은 이미 소진이 돼서 부과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국민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소위 소진과 관련된 그것은 아주 짧거나 이미 독일처럼 소진돼서 근근이 이어 가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까 35년에서 오십몇 년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요, 55년에서 71년으로.

○박범계 위원 55년에서 71년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국민연금 소진에 대해서 절치부심 합니까?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거야 소진이 돼 버리면 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박범계 위원 아니, 내 얘기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부과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박범계 위원 들어 봐요.

55년에서 71년으로 연장했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범계 위원 그러면 55년이라는, 국민연금의 탄생 역사와 비교해서도……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진에 대해서, 55년 뒤의 일을 이렇게 절치부심하는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모든 나라가 70년 정도의 시계를 통해서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70년 뒤의 얘기를 70년 전에 개혁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보통 70년의 시계를 가지고……

○**박범계 위원** 이런 점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체계가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비교적 괜찮은 체계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선동한, 그러한 위기를 조장한 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웃지 마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요. 위원님, 이거를……

○**박범계 위원** 아니면 제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박범계 위원**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기를 조장한다는 말씀은 오해고요. 이거는 어느 한 정부의 과제가 아니었고요. 연금개혁은 이때까지 모든 정부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고 국회 내에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때까지 왔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이렇게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물은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시겠어요?

○**박준태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하세요.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박범계 간사님 발언하시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니까 갑자기 합의가 잘됐다 이런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지요. 맞지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맞는 말이지.

○**박준태 위원** 맞지 않는 얘기지요.

○**박지원 위원** 맞는 말이지!

○**박준태 위원**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께서 재정전문가시기도 해서 여야 간의 합의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감사합니다.

○**박준태 위원** 지금 다양하게 연금제도를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 한 30년 정도 연금을 내고요 은

퇴해서 한 30년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율이 내는 돈이잖아요. 30년을 13% 내고요. 소득대체율이 받는 돈인데 43%로 30년을 받아요. 그러면 13%를 43%로 돌려받으려면 그 기간 동안에 기금 운용이 잘돼서, 그 돈이 잘 불려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운용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경제활동인구가 줄고요 인구 구조가 변하다 보니까 변수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거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 진짜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래서 오늘 합의된 안이 어떤 하나의 결실을 이루었지만 이제 개혁 작업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연금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자동조정장치 같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물가상승률만큼 더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재정 상황을 봐 가지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줄게 되거나 그다음에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조정되는 그런 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OECD 34개국 중에 28개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그거는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데 자동조정장치를 하면 자동으로 삭감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반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것은 특위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국민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그러한 제도는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했던 정부의 제안서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연금특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라는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변환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선진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OECD 38개국 중 24개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태 위원 38개국 중에 24개국이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체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고 야당에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고 이게 앞으로 특위를 통해서 계속 논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정부는 이것이 꼭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준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길이 먼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저도 위원장으로서 잠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국면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청래**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11.21%를 국민연금이 갖고 있었는데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3주를 제일모직 1주와 맞바꾸는 방식,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국민연금에게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여러 사람들이 법적 피해도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청래** 참여연대에서 추계를 했을 때 국민연금이 최대 6700억 피해를 봤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6700억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회수가 됐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소송 중에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이것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공단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공소시효 전에 이미 제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공소시효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진영주** 만료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만료 전에 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소송하면 이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최대한 돌려받아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우리 국민들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1000조 가까이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1000조 넘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000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구잡이로 주식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갖고 하다 보면 이익이 나는 경우는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막대한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이용당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나. 이게 정부 돈이 아니라 납부한 국민들 돈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남의 돈 빌려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 보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있어요, 걱정이. 이런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과 독립성인데요, 전문성은 어려운 여건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 금융전문가, 펀드매니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독립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별 투자 건이나 개별 회사 건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받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 정권에서, 저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버넌스에 따라 수책위라고 하는 데서 주로 핵심적인 사항을 전문가들이 정하고요. 그다음에 또 공단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그냥 물어볼게요.

국민연금 1000조에서 주식 투자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1000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000조, 그러니까 적립금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해외채권, 해외 주식, 국내 채권, 국내 주식 그다음에 대체투자……

○위원장 정청래 아니 1000조에서, 1000조가 100%라면 몇 %까지 투자가 가능하냐고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99.8%를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99.8%.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이익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손해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안정적인 것에도 투자를 하고……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을 어디에 투자를 해서, 잘못 투자해 가지고 손해를 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일단은 운용 주체인 기금운용본부에서……

○위원장 정청래 또 하나, 가끔 가다가 금융사고 터지는 것이 은행장이 누구랑 해 가지고 봐줘 가지고대출을 불법적으로 해 줬네, 그래서 그 회사에 이익을 남기게 해서 나중에 뒤로 받았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연금 가지고도 그렇게 장난칠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건 어떻게 방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는 있겠는데 현재 일단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고 리스크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정부 부처에서 어디에 투자해라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판단이지 부처나 정부나 권력의 입김은 차단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 과정 속에서의 국민연금의 손실이에요. 그때 국민들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 이후에 제도개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위원장 정청래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첨가 위원(1인)

유상범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장선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연금정책관 진영주